

제267회 임시회
'08. 2. 1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문화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08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김화수 의원외 7인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8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6일

상정일자 :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8. 1. 24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
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화수 의원)

제안 이유

○ 의용소방대 재해보상(요양·장애·장제·유족보상) 기준의
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상의 수혜범위가 현실에 맞도록
하고자 함

주요 내용

-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기준의 적용범위를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, 교육·훈련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홍보활동까지 확대적용
(안 제25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신승우)

-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소방관련 교육·훈련뿐만 아니라 홍보활동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해보상의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 제1항, 제26조 제1항, 제27조 제1항, 제28조, 제29조 중 “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”를 “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·훈련·홍보활동으로 인하여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) ① <u>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, 부상,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</u> ② (생 략)</p>	<p>제25조(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) ① <u>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·훈련·홍보활동으로 인하여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6조(요양보상) ① <u>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, 치료, 수술, 약제, 입원비를 지급한다.</u> ② (생 략)</p>	<p>제26조(요양보상) ① <u>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·훈련·홍보활동으로 인하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장애보상) ① <u>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</u> ② (생 략)</p>	<p>제27조(장애보상) ① <u>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·훈련·홍보활동으로 인하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28조(장제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.

제29조(유족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소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제28조(장제보상)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·훈련·홍보활동으로 인하여-----

-----.

제29조(유족 보상)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과 소방관련 교육·훈련·홍보활동으로 인하여-----

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□ 소방기본법

제37조(의용소방대 설치 등)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읍·면에 의용소방대(義勇消防隊)를 둔다.

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, 그 설치·명칭·구역·조직·임면·정원·훈련·검열·복제·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(隊員)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.

제38조(의용소방대의 근무 등)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
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
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.

제39조(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)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·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
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